

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 2018. 12. 18.

개정 2021. 07. 19.

개정 2022. 10. 05.

개정 2023. 09. 01.

개정 2024. 06. 03.

개정 2025. 07. 17.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KT&G 그룹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9, 2023.09.0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계열회사·협력회사 임직원, 고객, 기타 제3자(이하 '외부 이해관계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25.07.17>

1.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2.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2장 비윤리 행위 및 신고

제3조(신고대상 행위) ① 신고대상 비윤리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간의 향응 접대,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의 공급횡령 등 업무와 관련한 비윤리 행위
3.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 상호간 인사 청탁,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4. 이해관계자와의 금전차용, 대출보증 요구 또는 인사 청탁 등을 하는 행위
5. 공급사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 행위
6. 기타 KT&G 그룹 윤리헌장, 윤리규정 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

<개정 2021.07.19, 2022.10.05, 2025.07.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13조 단서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09.01>

제4조(신고방법) ① 비윤리 행위를 인지한 자는 회사 홈페이지 비윤리행위 신고채널,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시점에 진행 중인 비윤리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05>

- ②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4조의2(신고처리) ① 회사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은 윤리경영부서에서 담당한다.

- ② 윤리경영부서는 비윤리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해당 접수 건을 내부감사부서 또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부서 등(이하 ‘관계부서’이라 한다)에 이첩하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계열회사, 협력회사, 관계법인 등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따라 비윤리 행위 접수 건을 이첩 받은 관계부서는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윤리경영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윤리경영부서는 회신받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관계부서에 재이첩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조사·자문 등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윤리경영부서는 비윤리 행위 중지·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윤리경영부서는 필요시 내부감사부서 등 관계부서에 직접 접수된 비윤리 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공유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윤리경영부서는 비윤리 행위 신고의 접수, 이첩, 종결 등 비윤리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9]

- ⑦ 윤리경영부서는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의 진행경과 또는 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준수 또는 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처리의 진행경과 또는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9.01>

제3장 보상금 등 지급 및 면책

- 제5조(보상금 등 지급)** ① 신고자가 신고한 비윤리 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윤리경영부서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신고된 비윤리 행위가 제4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관계부서의 회신 등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7.19, 2024.06.03>
- ② 전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윤리경영부서 소속 부서장은 ‘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보

상금 지급여부 및 별표1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9>

- ③ 윤리경영부서는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신고자, 관계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07.19>

1. 비윤리 행위 사실관계 자료
2. 신고에 따른 징계 현황
3. 기타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 ④ '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시에는 해당 변호사의 사업자계좌로 입금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1.07.19>]

- ⑤ 윤리경영부서 소속 부서장은 비윤리행위 신고를 통해 회사의 제도, 절차 또는 운영 등이 개선된 경우 신고인에게 소정의 감사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6.03]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신고 이전에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3. 신고 이전에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신고의 접수·관리·조사 또는 감사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직원이 해당기간 동안 업무 상 취득한 정보를 신고한 경우
6. 회사 임직원이 본인의 비윤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7. 기타 ‘위원회’ 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7>

제7조(자진 신고자 등의 면책) ① 비윤리 행위자가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비윤리 행위 자진신고자가 거래업체인 경우, ‘윤리규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윤리실천특별약관’의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비윤리 행위에 가담한 자가 내부감사부서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면책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책을 제외한다.

1. 자진신고자가 부당한 이익을 반환 또는 회사의 손실을 변상하지 않는 경우

2. 면책 또는 감경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비윤리 행위로 적발된 경우

제9조(보상금 환수 및 면책 취소) 보상금 지급 또는 면책 후에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거나 면책을 취소한다. 단, 보상금 지급 또는 면책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4장 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07.19, 2022.10.05, 2023.09.01>

1. 위 원 장 : 윤리경영부서 소속 부서장
2. 위 원 : 위원장이 임명하는 1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임직원 2인 이상
3. 간 사 : 윤리경영부서의 부장

제11조(위원회 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5>

1. 비윤리 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2. 비윤리 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구성원 중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구성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구성원은 심의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0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 참여가 제한되는 구성원은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출석 구성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의사정족수를 산정하기 위한 출석 구성원의 수에는 산입한다.<신설 2021.07.19>

③ ‘위원회’는 보상금 대상가액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07.1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07.19>]

④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을 결의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의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1.07.19>] <개정 2022.10.05>

제5장 신분보호 등

제13조(신분보호) ①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이하 이를 합하여 ‘신고자 등’이라 한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신고자 등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등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이 신고자 등의 신분을 누설하는 행위
2. 윤리경영부서, 내부감사부서 등 관계부서에 신고자 등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 등을 알아내기 위한 탐문을 하는 등 신고자 등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개정 2021.07.19>
3.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관 또는 부서를 이동시키는 행위
4. 신고자 등에게 인사·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개정 2021.07.19>

③ 윤리경영부서 및 내부감사부서 등 관계부서 소속 임직원은 제2항 제2호와 같은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 문의가 본 지침에 의거하여 금지된 행위임을 설명하여야 하며, 제2항 제1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자 등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 노출 경로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19, 2022.10.05>

④ 신고자 등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윤리경영부서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19>

⑤ 신고자 등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윤리경영부서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19>

⑥ 제5항의 신고 또는 시정 요청을 받은 윤리경영부서 또는 내부감사부서는 신고자 등이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19>

제14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 등은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부서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7.19>

② 윤리경영부서 또는 내부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징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한다. <개정 2021.07.19>

③ 윤리경영부서 또는 내부감사부서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고 있지 않은지를 6개월 단위로 2년간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7.19, 2023.09.01>

제14조의2(신고자의 성실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는 이 지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오로지 신고 대상자를 음해하고자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3.09.01]

제15조(기타) <삭제 2022.10.05>

부 칙<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19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7.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상금 지급 기준

1. 임직원 신고 시 보상 지급 기준(각 기준이 중첩될 경우 큰 금액을 지급) <개정 2022.10.05>

가) 보상대상가액별 지급기준(보상대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나) 및 다)기준만을 고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최대금액
1 억원 이하	20%	2천만원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7천6백만원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억2천6백만원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3억4천6백만원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10억원

※ 보상대상가액 : 신고된 비윤리 행위의 개선조치로 회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금액(이하 동일)

나)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기준

구 분	피신고자 인사처분			
	견책	감봉	정직	징계면직
보상금액	1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 피신고자의 인사처분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다) 업체 제재기준

구 분	제재 기간			
	6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1년6개월 미만	1년6개월이상~2년미만	2년자격제한
보상금액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2.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시 보상 지급 기준 <개정 2025.7.17>

- － 보상대상가액의 20%(보상금 한도 1천만원)

-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직업	
	연락처			
	주소			
신고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신고내용				
증거서류				
비고				

- 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21.07.19>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내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 제목 또는 관련사항			
신청자 (신청대리 인)	성명		직업	
	연락처			
	주소			

- 별지 제 2 호 서식<개정 2022.10.05>

제○차 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서면결의서

비윤리 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 제12조(위원회 운영)에 의거, 아래 보상금 지급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결의하고자 하니 찬성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보고)안건			결의사항		의견
안건번호	내용		찬성 (○)	반대 (×)	
제○○호	제목				
	신고자				
	보상금 대상가액	원			
	보상금 지급금액	원			

- 붙임 : 비윤리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위와 같이 심의 결의함

0000년 0월 0일

위 원 :
(인)

간 사 :
(인)

-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2.10.05>

제○차 보상금 지급 심의 위원회 결의서

결 의 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장
결의일자	20 . . . (: ~ :)		장 소	
작 성 자				
번호	제 목			결의결과
주 요 내 용				